## 투약허가서

## **Authorization to Administer Prescribed Medication**

제공과 면책권 동의서(Release and Indemnification Agreement)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ockville, Maryland 20850

MCPS Form 525-13 2019년 2월

1부: 학부모/후견인이 작성합니다. (TO BE COMPLETED BY THE PARENT/G	UARDIAN)		
본인은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와 Montgomery County De 자격증 있는 처방자(2부 참조)가 처방한 처방약 제공을 요청 및 허락합니다. 본인은 M 있는 처방자의 지시에 따라 이 학생에게 처방약의 제공을 허락하며 소송, 요구, 조치 등 개요를 읽었으며 요구되는 의무사항을 이해했습니다.	CPS와 DHHS와 그 직원, 교직원, 고	그용인이 2부에 명시	시된 의사/자격증
학생 이름 성, 이름, 미들네임 이니셜			
MCPS 학생번호# 생년월일/ 학교 이름			
<b>처방전: □</b> 갱신 □ 새 처방 새 처방의 경우, 첫날은 집에서 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투	.여 낙짜: / /		
학생이 복용하는 모든 약을 적으십시오. (비처방약도 포함)	· = ·		
학부모/후견인	서명	_전화번호 날짜	_//
	PRESCRIBER)		
DHHS and MCPS discourage the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to students in school of administered before and after school should be so prescribed. Only non-parenteral medication personnel will, when it is absolutely necessary, administer medication to studen programs and overnight field trip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outlined on the back	nedications are administered excepts during the school day and while	t in specific emerg	ency situations.
PLEASE USE A SEPARATE FORM FO	R EACH MEDICATION		
Name of Medication (trade name or generic):	Diagnosis:		
Dosage: Time(s)  Ranges not accepted (i.e., 1 to 2 tabs or 2 to 4 puffs)	to be given at school:		
Route of Administration:			
Medication orders effective □ Current school year, <b>OR</b> □ Effective dates			
Side Effects:			
If PRN, specify when indicated (signs/symptoms)			
Frequency of administration (ranges not accepted, i.e. every 2 to 4 hours)			
Authorized Prescriber's Name (print/type)			
Authorized Prescriber Signature			
SELF-CARRY/SELF-ADMINISTRATION OF EMERGENCY N	MEDICATION AUTHORIZAT	ION/APPROVA	<b>\L</b>
Self-carry/self-administration of <b>emergency</b> medication such as inhalers and epir prescriber and be approved by the school nurse according to the Maryland State	nephrine auto-injectors must be a School Health Services Guideline	authorized by the s.	authorized
Authorized prescriber's authorization for self-carry/self-administration of emergen	cy medication		
Signature		Date	_//
School Nurse (RN) approval for self-carry/self-administration of emergency medic	ation		
Signature		Date	_//_
- 3부: 학교 간호사 또는 학교장이 작성합니다. (TO BE COMPLETED BY THE S	CHOOL COMMUNITY HEALT	H NURSE OR P	RINCIPAL)
Check as appropriate:			
☐ Parts I and II above are completed, including signatures. (It is acceptable authorized prescriber's stationery/prescription form)	e if all items of information in	Part II are writte	n on the
☐ Prescription medication is properly labeled by a pharmacist.			
☐ Medication label and authorized prescriber order are consistent.			
☐ Over-the-counter medication is in an original container with the manuf	acturer's dosage label and safe	ety seal intact.	
/Date any unused medication is to be collected by the parauthorized prescriber's order).		•	n of the
Signature, School Community Health Nurse (SCHN)/Principal		Date	

## 정보와 절차

- 1. 약은 학부모/후견인의 서면 허가와 의사/자격증 있는 처방자의 서면 지시가 없으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약은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모두 포함합니다.
- 2. 이 양식은 학교에서의 약 투약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MCPS Form 525-14, 아나필락시스 진단받은 학생을 위한 응급조치와 아나필락시스 자동 주사기 투약 허가서 및 면책동의(Emergency Care for the Management of a Student with a Diagnosis of Anaphylaxis, Release and Indemnification Agreement for Epinephrine Auto Injector)는 아나필락시스 자동 주사기 투약을 선호할 경우에 작성합니다.
- 3. 학부모/후견인은 1부를 작성하고 2부를 의사/자격증 있는 처방자에게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복용/투약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후견인은 매 학사연도마다 양식을 다시 작성해야 하며 복용량이나 복용시간이 바뀐 경우에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자격증 있는 처방자는 2부 작성 대신 병원 메모장이나 처방전용 종이를 사용해도 됩니다.) 정보에는 다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이름, 병명, 약명, 복용량,투여 시간,투약 경유,투여 기간,부작용,의사/자격증 있는 처방자 서명과 날짜
- 4. 약은 학부모/후견인 또는 특별한 경우, 학부모/후견인이 지정한 성인이 학교에 배달해야 합니다. 학생이 가지고 온 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보건담당(DHHS) 또는 학교 담당자(MCPS)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 5. 처방약은 약사가 제공한 약병에 들어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비처방 OTC 약은 복용량이 적혀있고 미개봉인 상태로 구매시 들어있는 용기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의사/자격증 있는 처방자가 제공하는 약샘플은 적절한 의료 레이블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
- 6. 응급용 약이 아닌 새 약은, 학교에서 복용하기 전에, 집에서 첫날의 약복용을 마쳐야 합니다.
- 7. 학부모/후견인은 사용하지 않은 약을 의사/자격증 있는 처방자의 지시일이 지나거나 또는 종업일 1주일이내에 수거해가야 합니다. 일주일 후까지 찾아가지 않는 약은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 8. 스스로 약을 복용하거나 의료 처방을 받지 않은 약은 온전히 부모님/후견인의 책임이며 MCPS와 DHHS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의사/자격증 있는 처방자의 지시와 부모/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약은 학교 보건실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 9. 학생의 약 복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 10. 천식 흡입기와 과민증/아나필락시스의 에피네프린 주사기와 같은 학생이 소지하는 비상시 응급 처치약에도 의사/자격증 있는 처방자의 지시와 부모/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호교사 또는 학교 간호사는 학생이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는지 평가 및 승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호흡기나 에피네프린 주사기를 사용하였으나 차도가 없고 나아지지 않을 경우, 학생은 반드시 보건 담당교사나 MCPS 직원에게 알려서 911에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11. 학교 간호사는 학생 또는 학생의 처방약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Health Information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의 허락에 근거하여 지정된 처방자에게 연락합니다.